

 신안산대학교	<b>학생단체 활동에 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관리 규정</b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규정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-5-15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16. 6. 23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24.3.20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책임부서/팀·계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입학학생처</td></tr> </table>	규정번호	2-5-15	제정일자	2016. 6. 23.	개정일자	2024.3.20.	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규정번호	2-5-15									
제정일자	2016. 6. 23.									
개정일자	2024.3.20.									
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									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대학본부, 학과, 총학생회, 동아리 등이 시행하는 각종 학생 단체 활동 시 학칙 제8장 학생활동 제41조(학생활동의 사전승인) 의거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본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생단체 활동 참여자에게 적용 한다.

**제3조(관리 및 운영)** ① 학생단체 활동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관리 운영은 입학학생처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②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약서체결 등을 통한 대학 내 안전 문화를 개선한다.

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에서 정한 「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」에 따른다.

**제4조(학생단체 활동 책임자)** 학생단체 활동의 책임자는 최소 지도교수1인과 대표 학생 1인으로 두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.

1. 학과 주관 행사 :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, 행사주체 대표학생 1인
2. 대학본부 주관 행사 : 부서장 또는 부서에서 지정하는 교직원
3. 총학생회 주관 행사 : 입학학생처장 또는 입학학생처장이 지정하는 교직원,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총학생회 임원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4. 동아리 주관 행사 : 동아리지도교수, 동아리회장 또는 동아리회장이 지정하는 동아리 임원
5. 그 밖에 학생단체 행사 : 총장 또는 입학학생처장이 지정하는 자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**제5조(교육)**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, 행사별 주체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.

**제6조(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확보 매뉴얼)** 학생단체 활동 시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둔다.

**제7조(허가 및 승인)** ① 학생단체 활동 행사 5일전(토요일, 일요일, 국경일 제외) 안전사고 예방(체크리스트) 사전 점검 후 허가원을 입학학생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②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(사전 점검 / 출발 전 점검) 확인자는 학생단체 활동의 책임자로 한다.

③ 학생단체 활동 매뉴얼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.

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.

**제8조(불허 또는 취소)** 입학학생처장은 학생단체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를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1. 단체 이용시설 및 교통안전에 부합된 경우
2. 참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
3. 그밖에 긴급한 위반행위나 안전 또는 인권예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9조(결과보고)** 학생단체 활동 행사가 종료된 후 1주 이내에 별도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학생처에 제출한다.

**제10조(해외활동)** 학생의 해외 단체 활동 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.

- ① 해외활동 2주 전에 학생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**교학처**에서는 외교부 여행 경보단계를 확인하고 안전단계의 국가만 허가할 수 있다. <2023. 3. 30. 개정>
- ③ 해외활동 10일 전까지 교내 보건실에 의뢰하여 감염병(뎅기열, 콜레라, 장티푸스 등)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.
- ④ 해외 활동 학생은 필요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11조(테러예방)**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, 행사시에는 주관부서가 입학학생처와 협의하여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, 소방 등 관계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